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용균 의원
나. 의안번호: 제2390호
다. 발의일자: 2025.2.3.
라. 회부일자: 2025.2.5.

2. 제 안 사 유

-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절약 문화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공공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 설치 규정 명시(안 제6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도물 절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조례로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건축물, 시설)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안 제6조와 같이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대상(시설)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수도법」 제15조제1항은 ‘건축물’과 ‘시설’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¹⁾’과 달리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안 제6조에서 명시한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서울시민의 일평균 수도물 사용량²⁾, 6개 정수센터 시설 가동률³⁾ 및 최근의 기후변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수도물 절약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23.12.29)을 통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설치 의무 대상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물 절약을 꾀하고 있으나 별도 지원 실적은 없고 절수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의 사무⁴⁾라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명확한 정의 및 세부 용도에 따른 종류를 구분

2) 1인당 일평균 수도물 사용량은 서울 308L, 런던 149L, 파리 187L(출처: 환경부, 2020 세계 물의 날 자료집)

3) 서울시 6개 정수센터 최대 가동률은 93.1%('22년 기준)로 적정 가동률(7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4)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여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한 실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돗물 절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시 절수설비 설치 현황(2023.12.기준)>

조 항		내 용
거 축 물	'01년 이전 설치	• '00년~'06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존주택 양변기용 절수기기 설치(172만 개) • '07년~'08년: 시 산하 공공기관(625개소) 절수사업 추진 • '09년~'12년: 대형 건축물 화장실(대·소변기, 수도꼭지) 유량조절(496,578개) • '13년 이후 절수사업 추진 실적 없음
	'01년 이후 설치	• 100% 설치 완료(주택 1,694,815호 등 포함)
숙박업 및 목욕장업		• 100% 설치 완료(3,858개소)
체육시설업		• 100% 설치 완료(237개소)
공중화장실		• 100% 설치 완료(1,249개소)
공공기관 시설(건축물 제외)		• 실적 없음

-
1. ~ 2. (생략)
 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